

의안번호	제3123호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제 의 자	고성군의회의장
제 의 연월일	2026. 7. 22.

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제312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의연월일: 2026. 7. 22.

제 의 자: 고성군의회의회장

1. 제의이유

-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성인원: 10명
- 존속기간: 구성일로부터 2028. 6. 30일까지
- 처리안건
 - 고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
 - 고성군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

3. 위원 선임내역(안): 10명

소속위원회	위 원 명	비 고
기획행정위원회	손상재, 윤정애, 최상립, 이우영, 양애정	
산업경제위원회	김석한, 김원순, 우정욱, 이승환, 이은호	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,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변경계획안)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<삭제 2022. 1. 13 조 2709>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